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1. 20.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(2001. 3.28 법률6443호) 2001. 7.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
- 나. 현행 문화재 보호법 또는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구세감면조례로 전액 감면하고 있어
- 다.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재산세·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하기 위함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를 전액감면하고 있으나
- 나. 문화재보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를 각각 50%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
- 다. 구세감면조례 제8조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자구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문화재보호법 제42조
- 나. 입법예고 : 2001.10.10일 내고장사하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없음
- 다. 기 타 :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(부산광역시세정13400-20571)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중 “지정문화재”를 “문화재”로 하고,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8조(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)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</p>	<p>제8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①----- ----- -----</p>
<p>1.문화재보호법 제4조,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</p>	<p>1. ----- ----- -----</p>
<p>2.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에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</p>	<p>2. ----- ----- -----</p>
<p>3.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</p>	<p>3. ----- ----- -----</p>
<p><신설></p>	<p>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

문화재보호법 발췌

제42조 (문화재의 등록) ①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(이하 "등록문화재"라 한다)의 등록기준·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01·3·28] [시행일 2001·7·1]

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발췌

제35조의2 (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)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
2. 지역의 역사·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,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
3.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
4.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·예술적 가치가 큰 것
5.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

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,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.

③제1조의2의 규정은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가지정문화재"는 "등록문화재"로, "지정"은 "등록"으로 본다. [본조신설 2001·9·8]